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0 월 1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43호

붙임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신고로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1. 기존 축사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제2조제5호 관련)

| 축종 |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시설(높이 2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
| 소, 말, 양, 사슴, 젖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 (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돼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닭·오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 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p> |
| <p>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② (생략)</p> <p><u><신설></u></p> <p>③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와 같다.</p> <p>④ <u>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 <p>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u></p> <p>④ ----- ----- <u>별표 2</u>-----.</p> <p><u><삭제></u></p> <p>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u>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p> |

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 ~ 제7조 (생략)